

## 요 약

영국은 금융위기 및 금융사고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최근 금융회사 고위 임직원에게 보다 높은 책임성을 부여하는 고위관리자 인증제도(Senior Managers Certification Regime, 이하 'SM&CR 제도')를 도입함. 동 제도하에서 고위관리자는 자신의 책임영역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는데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인적 제재 대상이 되며, 규제 명확성을 위해 책임진술서 및 책임지도 등의 수단을 활용함.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제도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 금융감독당국은 2023년 6월 22일 (i) 금융회사가 스스로 경영진별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사전에 정하고, (ii) 기준 마련 외에 운영·준수 등 일련의 내부통제 과정 전체를 규율대상에 포함하며, (iii) 이사회내의 내부통제 의무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이하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발표<sup>1)</sup>함
  -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임원의 담당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 즉, '책무구조도'를 마련토록 하고 각 임원에게 소관 책무 범위 내에서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 '책무'란 준법, 건전경영, 소비자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분야별 내부통제 책임을 의미하며, 각 임원은 해당 직책별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등 적극적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책무구조도'상 해당 임원은 소관 영역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가 부과되는데, 이는 위법·부당행위 자체가 아니라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므로 상당한 주의(사전적·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정도의 관리조치)를 다했다면 책임을 경감·면제함
  - 개선 방안은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 규제방식, 특히 개인에게 내부통제에 관한 책임을 부과하는 영국의 고위관리자 인증제도(Senior Managers Certification Regime, 이하 'SM&CR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이해됨
- SM&CR 제도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12년 리보금리 조작사건 등 중대한 행위규범 위반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보다 높은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도입<sup>2)3)</sup>됨

1) 금융감독당국은 2022년 8월부터 국정과제인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 제도개선(국정과제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과 상호성 있는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바 이를 토대로 본 방안을 발표함(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6. 22),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에 주력 -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및 동 보도자료 별첨2.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2)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전면 시행됨

3)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이하 'FCA') 홈페이지(<https://www.fca.org.uk/firms/senior-managers-certification-regime>)

- SM&CR 제도는 크게 (i) 고위관리자 제도(Senior Managers Regime), (ii) 인증 제도(Certification Regime), (iii) 행위 규범(Conduct Rules)으로 나누어짐
  - 금융회사 내 모든 임직원(청소, 접수원, 보안요원 등 보조 업무 수행 직원은 제외)과 관련된 요건을 규정하는데, 책임(Responsibility)의 정도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달라짐<sup>4)</sup>

○ 고위관리자 제도(Senior Managers Regime)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핵심적 역할인 고위관리 기능(Senior Management Function, 이하 'SMF')을 수행하는 고위관리자들은 선임 전에 적격성을 갖추고(Fit&proper)<sup>5)</sup> 금융감독당국<sup>6)</sup>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SMF는 금융회사의 의사결정 역할을 하는 최고위 관리자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배분하기 위해 규정에 열거되어 있음
  - 보험회사<sup>7)</sup>에 대해서는 주요 경영진(Chief Executive, Chief Finance Function, Chief Risk Function, Head of Key Business Area, Chief Actuarial Function 등)과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의장(Chair, Chair of Risk Committee, Chair of Nomination Committee 등) 등이 이에 해당됨
- SMF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관리자는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이하 'FSMA')에 따라 책임질 의무(Duty of responsibility)가 부여되며, 이는 고위관리자의 책임 영역에서 위반이 발생했을 때 고위관리자에 대한 제재 근거로 작용함
  - 위반 자체가 아니라 해당 위반 행위가 발생한 업무에 관해 고위관리자가 위반 당시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 직위에서 그러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취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sup>8)</sup> 책임을 부담함
- 실효적 제도 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해 각 고위관리자의 주요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히 함
  - (책임진술서) 금융회사는 고위관리자의 역할에 내재된 책임을 포함해 각 고위관리자의 책임 영역을 기술한 책임진술서(Statement of Responsibilities, 이하 'SoR')를 마련하여 금융감독당국과 공유해야 함
  - (지정 책임) 지정 책임(Prescribed Responsibilities, 이하 'PRs')은 고위관리자의 고유한 책임에 더하여 법규 준수 및 건전성을 위해 업권 공통으로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고위관리자들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책임들을 말하는데, SM&CR 제도 이행 관련 책임 및 준법감시, 교육, 내부감사 등으로 규정에 열거<sup>9)</sup>되어 있음
  - (책임 지도) 보험회사와 같이 FCA 및 PRA 양측의 규제를 받은 금융회사들은 책임 지도(Responsibilities Map, 이하 'RM')를 마련·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각 고위관리자의 성명과 그들이 맡은 책임, 고위관리자들 간의 PRs 배정 내역 및 회사 내부의 보고·책임 체계 등을 보여주는 회사 차원의 문서<sup>10)</sup>를 말함

---

4) Bank of England 홈페이지(<https://www.bankofengland.co.uk/prudential-regulation/publication/2023/march/review-of-the-senior-managers-and-certification-regime>)

5) 적격성을 평가하는 주된 요소는 (i) 정직성, 성실성 및 평판(Honesty, integrity, and reputation), (ii) 역량(Competence and capability), (iii) 재무적 건전성(Financial soundness)임(FIT 1.3.1B in the FCA Handbook)

6) FCA 및/또는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이하 'PRA')

7) Solvency II firm 및 large NDFs 기준

8) Section s.66A(5)(a) and (b) of FSMA

9) SYSC 24 in the FCA Handbook, PRA Supervisory Statement 28/15 및 PRA Rulebook

10) FCA(2019), "The 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e Regime: Guide for insurers", p. 21

- 인증 제도(Certification Regime)에 따라 SMF는 아니나 고객이나 금융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역할(Certification Functions, 이하 'CFs')을 수행하는 인증 대상 직원들(Certified Staff)에 대해 금융회사 선임 시 및 매년 자체적으로 적격성을 확인하고 인증해야 함
  - CFs에는 민원처리나 계약인수 부서의 장과 같은 상당한 관리 기능, 손해사정, 투자관리와 같은 주요 업무담당자, 고유자금 운용, 고객자금보호(CASS) 감독, 고객 관리 등<sup>11)</sup>이 있음
- 행위 규범(Conduct Rules)은 청소, 보안 인력과 같이 보조적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들(Ancillary Staff)을 제외하고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공통 규범이 있으며, 고위관리자에게는 추가적 규범이 적용<sup>12)</sup>됨

〈표 1〉 행위 규범(Conduct Rules)

개별 행위 규범(Individual Conduct Rules)	고위관리자 행위 규범(Senior Manager Conduct Rules)
1. 성실하게 행동할 것 2. 적절한 기술, 주의, 그리고 근면함을 가지고 행동할 것 3. FCA, PRA 및 기타 규제기관에 대해 개방적이고 협조적일 것 4. 고객의 이익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공정하게 대우할 것 5. 적절한 시장행위 기준을 준수할 것 6. 소매 고객에게 좋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행동할 것	1. 책임을 맡고 있는 회사의 업무가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 2. 담당하는 회사의 업무가 규제 체계의 관련 요건 및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 3. 책임을 위임할 시에는 적절한 사람에게 위임하고 위임된 책임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 4. FCA 또는 PRA가 합리적으로 통지를 기대할 만한 정보를 적절하게 공개할 것

- 금융회사 임직원별로 SM&CR 제도의 적용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 금융회사 내 SM&CR 제도 적용범위

고위관리자 (Senior Managers)	고위관리 기능(SMF)을 수행하기 위한 적격을 갖추어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책임진술서(SoR)에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한층 강화된 행위 규범(Conduct Rules)이 적용되고 규제 조회(Regulatory Reference) <sup>1)</sup> 대상이 됨	개별 행위 규범 (Individual Conduct Rules) 공통 적용
인증 대상 직원 (Certified Staff)	인증 대상 직원의 적격성은 금융회사가 임명 시 및 매년 자체 평가하여야 하며, 규제 조회 대상이 됨	
기타 직원 (Other financial services staff)	-	

주: 1)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선임 후보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들에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에 관해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이를 규제 조회라 함(SYSC 22.1 Application in the FCA Handbook)

자료: 각주 4의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11) SYSC 27.8 in the FAC Handbook, Certification Part of the PRA Rulebook

12) COCON 2.1 Individual conduct rules and COCON 2.2 Senior manager conduct rules in the FCA Handbook

- 전면 시행 4년차를 맞고 있는 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낮은 조사 및 제재 건수,<sup>13)</sup> 판단기준의 명확성 등 감독당국의 집행 및 제도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sup>14)</sup>하기도 함
  - 2022. 12 영국 정부는 금융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SM&CR 제도를 포함한 30개의 규제개혁 계획, 이른바 Edinburgh Reforms를 발표한바, 현재 영국 금융감독당국(HM Treasury, FCA, PRA)은 SM&CR 제도의 운영, 실효성, 범위 등 측면에서 향후 개혁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임
    - HM Treasury<sup>15)</sup>와 FCA·PRA<sup>16)</sup>는 이를 위해 2023. 3. 30~2023. 6. 1까지 각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함
- SM&CR 제도는 우리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개선 방안에 포함된 임원의 관리의무 및 규제 명확성을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등에 영향을 미침
  - 금융감독당국은 내부통제 개선 방안 발표 이후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향후 보험 분야에서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면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람직한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SM&CR 제도의 입법취지 및 세부 내용,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 개선점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 및 적극적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사료됨

13) 2022. 3 현재 고위관리자에 대한 제재 건수는 4건에 불과함(<https://www.fca.org.uk/freedom-information/information-enforcement-investigations-senior-managers-may-2022>)

14) 안유미(2023), 「영국 SM&CR 제도 운영을 통해 본 국내 내부통제 제도 개선 이슈」, 『자본시장포커스』, pp. 5~6

15) HM Treasury(2023), “Senior Managers & Certification Regime: a Call for Evidence”

16) FCA·PRA(2023), “DP1/23 - Review of the 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SM&CR)”